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161198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6. 12. 08.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www.chicagobeautylab.com

시카고뷰티랩 정보공개서

엠제이부티고 주식회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엠제이부티고 주식회사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0, 6층 601호(석촌동, 석촌호수타워)

전화 : 02-567-8918

팩스 : 02-567-8905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02-567-8918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엠제이부티끄 주식회사	시카고뷰티랩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0, 6층 601호 (석촌동, 석촌호수타워)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6.09.08.	2016.09.08.	민준홍	02-567-8918	02-567-8905
	법인등록번호	110111-6172772	사업자등록번호	408-86-1516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민준홍/엠제이 부티끄 주식회사	시카고뷰티랩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0, 6층 601호(석촌동, 석촌호수타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민준홍	02-567-8918	02-567-890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이사	이수영/엠제이 부티끄 주식회사	시카고뷰티랩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0, 6층 601호(석촌동, 석촌호수타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민준홍	02-567-8918	02-567-890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감사	박재신/엠제이 부티끄 주식회사	시카고뷰티랩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0, 6층 601호(석촌동, 석촌호수타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민준홍	02-567-8918	02-567-890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이사	민세희/엠제이 부티끄 주식회사	시카고뷰티랩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0, 6층 601호(석촌동, 석촌호수타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민준홍	02-567-8918	02-567-890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이사	이성현/엠제이 부티끄 주식회사	시카고뷰티랩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0, 6층 601호(석촌동, 석촌호수타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민준홍	02-567-8918	02-567-8905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시카고뷰티랩” 이라 합니다)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시카고뷰티랩	
상 호	시카고뷰티랩 OO점	
상표(서비스표)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4,489,519	538,092	3,951,426	2,339,676	-88,895	38,788
2022년	4,677,723	2,746,862	1,930,860	993,934	-1,995,646	-2,021,566
2023년	4,176,343	3,554,423	621,920	836,012	-2,147,997	-2,393,064

2)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당사가 시카고뷰티랩 가맹사업관련 외의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가.의 매출액으로 같음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민준홍	대표이사	2016.09.08. ~ 현재	엠제이부티고 주식회사 대표	업무 총괄
	박재신	감사	2016.09.08. ~ 현재	엠제이부티고 주식회사 감사	감사
	이수영	이사	2018.07.01.. ~ 현재	엠제이부티고 주식회사 이사	경영전반
	민세희	이사	2019.03.29. ~ 현재	엠제이부티고 주식회사 이사	경영전반
	이성현	이사	2022.03.29. ~ 현재	엠제이부티고 주식회사 이사	경영전반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3	2	25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해당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서비스표)	해당상표를 가맹점운영권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등록일자 : 2016.03.24	등록번호 : 4103534080000	민준홍	2026.03.24. (2026.03.24.)
상표(서비스표)		등록일자 : 2016.03.24	등록번호 : 4103534040000	민준홍	2026.03.24. (2026.03.24.)

- 당사의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는 권리가 현재 등록 전인 경우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권리자부터 사용 허락을 얻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시카고뷰티랩의 가맹점을 시작한 날: 2016. 12. 27.
시카고뷰티랩의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6년 9월 8일

2. 시카고뷰티랩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엠제이부티 끄 주식회사	시카고 왁싱	민준홍	2016.12.~2023. 5.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95길 29-11, 3층(역삼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7길 56(역삼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길 42(논현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0, 6층 601호(석촌동, 석촌호수타워)
엠제이부티 끄 주식회사	시카고뷰 티랩	민준홍	2023.5.~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0, 6층 601호(석촌동, 석촌호수타워)

3. 시카고뷰티랩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시카고뷰티랩	대분류	소분류(주요용역)
	이미용	왁싱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시카고뷰티랩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4	4		2	2				
서울	4	4		2	2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최근 3년간 시카고뷰티랩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4				1	4
2022	4			2		2
2023	2			2		0

6. 시카고뷰티랩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시카고뷰티랩 외 가맹사업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시카고뷰티랩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직전년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평균 매출액	3.3m ² 당	상한	3.3m ² 당	하한	3.3m ² 당	
전체	해당없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 [시카고뷰티랩]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시카고뷰티랩]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해당없음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시카고뷰티랩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2023년간	38,936	38,936	-	
광고비	(비공개)	2023년간	37,907	37,907	-	
판촉비	(비공개)	2023년간	1,029	1,029	-	

○ 시카고뷰티랩과 관련한 광고 및 판촉비 내역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강남역종합금융센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02-569-9111

○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계약 체결일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예치하는 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엠제이부티고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귀하는 또한 가맹금 예치기관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항 목	내 용	비 고
보험상품명	프랜차이즈보증보험	
보험인(보험회사)	보험사	
보험계약자	엠제이부티고 주식회사	
피보험인(보험금수령인)	가맹점사업자	
보험범위	예치금액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개시일까지)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청구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여부결정 → 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시카고뷰티랩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550				
가맹비	5,500	계약 체결 일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시 일부 또는 전부	영업개시 후	
교육비	3,300	계약 체결 일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해지 시	교육시작 후	
오픈홍보비	2,750	계약 체결 일	홍보 및 판촉물 제작 후 반환 안됨, 단 제작 전 해약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홍보 및 판촉물 제작을 위한 소멸성 비용	
가맹비의 구성 : 가입대가(20%), 영업표지 사용 부여의 대가(30%), 노하우제공의 대가(20%), 개업지원의 대가(20%), 기타 자료제공의 대가(10%)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2,000			
계약이행보증금	2,000	계약 체결 시	금전지급의무위반, 손해배상 등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3,550
가맹비	5,500
교육비	3,300
오픈행사비	2,750
계약이행보증금(부가세 없음)	2,000(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비고
		기준면적: 49.5m ²	3.3m ² 당			
총계		49,500		하단참조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공급업체	29,700	1,980	개별 계약	공사/공 급 전 계약취 소	외장및 추가공 사별도
설비	가맹본부	2,200	147	물품입고일 완납		
간판	가맹본부	5,500	-	물품입고일 완납		
집기	가맹본부	3,300	-	물품입고일 완납		
기타 물품	가맹본부	3,300	-			
초도물품	가맹본부	5,500	-			

○ 위 표의 금액은 가맹점 규모 및 매장 환경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위 표의 3.3m²당 금액의 산정은 기준 면적을 기준으로 산술적으로 나눈 금액이며, 설비/간판/집기/기타품목/초도물품은 면적과는 성질상 비례하지 않아서 실제 면적과는 비용이 같거나 적은 등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 철거, 점포외부공사, 간판, 전기증설 비용, 의·탁자, 에어컨 등 기타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 및 사항은 별도로 비용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특수매장(할인점 등)에서 가맹점을 운영할 경우 특수매장 임대인의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정하는 메뉴얼 및 설계 도면에 따라 설계 시공하여야 합니다.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검수하기 위하여 직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수비용으로 **3.3m² 당 금이십이만원 (₩220,000, VAT포함)**을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1)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3)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4) 점포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맹점사업자부담입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기본적인 매뉴얼 숙지 가능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종업원	기본적인 매뉴얼 숙지 가능자	만18세 이상일 것(미성년자 제외)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

- 시카고뷰티랩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일회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역	지급 상대방	금 액(단위:천원 /VAT포함) 또는 산정기준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로열티	영업표지 및 기타 지식재산권 사용 등의 대가	가맹 본부	매월 330천원	익월 15일	후불로 반환안됨
교육비	수시 교육	가맹 본부	실비 또는 1인당 ₩100천원 (1일 1회 4시간 기준)	개별 청구	실비로 반환 안됨
	보수교육	가맹 본부	실비 또는 1인당 ₩100천원 (1일 1회 4시간 기준)	개별 청구	개별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실비로 청구되기 때문에 반환 되지 않음
광고 분담비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되는 공동 광고	가맹 본부	V. 8.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개별 청구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판촉 분담비	판촉	가맹 본부	V. 8.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개별 청구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POS 사용료	POS시스템사용료	공급업 체	업체와 협의	개별 청구	후불로 반환 안됨
지연 이자	비용의 지연에 따른 이자	채권자	연 20%	개별 청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여서 반환 안됨
점포환	간판 및 인테리어	계약상	가맹본부 분담 부분 제외	개별	발주 전 소요 비용 공제

경개선 비용	시공 비용	대방	나머지 모두	청구	후 반환
-----------	----------	----	--------	----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다른 간판변경비용은 가맹점의 규모, 간판의 재질, 변경사유, 당사자의 귀책사유, 계약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당사는 귀하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특수매장(할인점 등)에서 가맹점을 운영할 경우 특수매장 임대인의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로열티, POS사용료, 음원사용료, 정수기는 월단위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단 조건별 비용발생은 협력업체 별도계약 기준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카고뷰티랩 가맹점 운영을 점검하고 가맹계약서 및 영업규정을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가 가맹점의 위생,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원·부자재관리, 고객관리, 메뉴관리, 재고관리 등의 운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에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원활한 배송을 위하여 영업외 시간에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이 유효기간 만료 등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개발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며, 가맹점사업자의 간판 변경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귀하가 운영하는 시카고뷰티랩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사에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양수인은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수인이 당사와 신규가맹 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가맹비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개점에 필요한 교육 등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 당사는 양수자에게 양수자에게 시설의 노후나 내부 매뉴얼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양수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당사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제39조 (계약의 종료와 조치)

-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의 상호 .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과 매뉴얼 및 운영양식,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문서 등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지체 1일(日)당 금삼십만원 (₩3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18조 제4항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잔존 채무 . 손해배상액의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제1항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의 철거 . 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합의 해지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 ④ 가맹계약이 종료 후에 제1항의 조치가 5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가맹본부가 이를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시카고뷰티랩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에 대한 사항은 가맹계약서에 따라 통지가 됩니다.

○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시 권자/강제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권유 품목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영업표지가 삽입되는 경우 구입이 강제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해 브랜드와 관련하여 2023년에는 가맹점이 없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해당 브랜드와 관련하여 2023년에는 가맹점이 없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2023년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2023년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

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상품·용역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1. 페이스 왁싱(헤어라인, 눈썹, 인중) 2. 바디 왁싱(겨드랑이, 팔전체, 팔하프, 다리전체, 종아리) 3. 비키니라인 왁싱 4. 브라질리언 왁싱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품목(상품 및 용역)만 제공하여야 함	1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당사가 지정하는 품목은 신상품 개발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 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는 거래상대방에 따른 판매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상기 1) 참조	가격표 제공	변경 시 공지	

○ 귀하는 당사가 권장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로 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영업지역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왁싱 전문점	시카고뷰티랩	-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당해 브랜드와 상기 기재된 범위와 같은 동일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상기와 같습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설정기준 (계약서 제12조)	설정방법
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계약매장에서 보행로거리(정상적인 횡단보도 및 인도)로 500m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지도나 내용을 [별첨3]한 경우 별첨이 우선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특수시설은 별개의 영업지역으로 한다. 전항과 본항의 영업지역은 서로를 포함하지 않는 독립된 영업지역으로 한다. 1. 백화점 -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2. 대형마트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3. 대형쇼핑몰 - 가든파인브, 타임스퀘어, 여주아울렛 등 4. 놀이동산 -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 5. 기타 상기 각목에 상응하는 주변과는 독립적인 상권을 인정할 수 있는 지역	가맹계약서 별지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영업지역 밖에 고객에 판매하는데에 따르는 제한	관련 계약조항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계약서 제12조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계약서 제12조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계약서 제12조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100%	0%	0%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가맹점만)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 가맹점이 없고, 직영점이 1개점 있으며,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직영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며, 온라인 전용상품은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시카고뷰티랩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단, 갱신시 계약기간은 1년)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7조 1항 각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7조 1항 각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7조 1항 각호
- 가맹사업의 브랜드 보호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판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37조 1항 각호
- 시카고뷰티랩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37조 1항 각호
- 당사에서 귀하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관련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37조 1항 각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공급품, 교육비, 가맹비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4.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 승계, 담보제공, 사업자위치변경을 한 경우 7. 영업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한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7항에 의한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개량,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11.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공급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12.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자점매입하는 경우 13.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공방법, 종류(메뉴 등), 판매방법, 서비스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1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1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제38조 제1항 각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다만, 아래 표에 기재된 계약 해지 사유 중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 31조 4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귀하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1개월 전에 당사에 계약해지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계약의 종료시까지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정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서면 합의를 거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와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1개월 이내) →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당사 (02-567-8918)

○ 단, 양도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귀하에게 통지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는 양도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계약이행보증금과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 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가맹비와 계약이행보증금,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양수자에게 양수자에게 시설의 노후나 내부 매뉴얼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양수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가맹점운영권을 대리로 행사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상속인의 통지	모든 권리의무	양도절차와 동일	
대리행사	본부승인 시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불가능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귀하는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당사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시카고뷰티랩 가맹사업과 동종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확성 전문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 당사 (02-567-8918)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기존의 영업지역 내에서 종료 후 1년간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시카고뷰티랩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평일 10:00~22:00 주말, 휴일전날 10:00~20:00	연중 무휴	문의 : 당사 (02-567-8918)

○ 가맹점사업자는 1월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매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명 이상	가맹사업자 선택	가맹사업자 지정자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 당사는 시카고뷰티랩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30%	광고비의 70%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상품광고 +가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의 50%		
	가맹점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개별 행사	가맹점 전액부담				월별 판촉 행사

○ 판촉의 경우, 기획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판촉물 구입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전국단위 광고의 가맹점부담액은 가맹점부담액 총금액을 가맹점 매장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당사의 계획, 주관하는 이동통신 제휴, 신용카드 제휴 등과 같은 각종 제휴 행사진행 시 귀하에게 공지하여야 하고, 귀하는 이에 협조하여 참여 하여야 합니다. 단, 참여의사가 없을 시 귀하는 당사에게 사전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업체 제휴 행사진행 시 제휴 업체와 당사의 계약 내용과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	협의 절차
광고	광고안 본사 서면 제출 → 광고안 본사 검토 (7일) → 수정 및 승인여부 결정 통보 (7일)
판촉	판촉안 본사 서면 제출 → 판촉안 본사 검토 (7일) → 수정 및 승인여부 결정 통보 (7일)
1. 광고, 판촉 시 제출서류 : 광고, 판촉 목적 및 내용, 제작물 이미지	
2. 사전 점검사항 : 로고 및 상표 사용, 광고 판촉 지역, 현진행중인 행사와의 중복 관계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규정
⑥개점 전 가맹점사업자가 일방적 변심에 의하여 해지•중단•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후 3일 이내의 경우는 예치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3일 이후에는 1일(日)당 일금이십만원 (₩200,000원)을 추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⑤전 항의 요구 품목 또는 의뢰한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지 않을 시에는 공급받았더라면 지불하였을 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
④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서면에 의한 합의가 아닌 계약위반•일방적 해지•중단•종료 등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중지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M ² 당 X ₩10,000 X 계약기간 잔여월수	제38조
①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의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과 매뉴얼 및 운영양식,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문서 등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지체 1일(日)당 금삼십만원 (₩3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9조
④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2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계약 기간 내 제3항(경업금지 의무)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별로 금오천만원(₩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0조
①당해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 기재된 손해배상이나 위약벌 규정 이외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

IV.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30~40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1일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3~5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3~5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20~3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5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 규모에 따라 소요비용의 금액과 지불하는 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귀하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점포환경개선 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다.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 부담 제외 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가맹점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시에 가맹본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하여 협의로 결정이 되며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지원항목,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가맹점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시에 가맹본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하여 협의로 결정이 되며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지원항목,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시카고뷰티랩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현재 이에 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시카고뷰티랩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시카고뷰티랩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36시간	3,300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교육 내용에 따름	실비 또는 1인 1일 100	필요시 실시
보수 교육	교육 내용에 따름	실비 또는 1인 1일 100	필요시 실시

○ 교육이수는 세부사항에 따라서 최소시간 및 비용 등 달라지며, 내용확정 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3. 교육 · 훈련의 주체

○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와 직원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당사는 귀하가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나 귀하나 귀하가 채용한 직원의 교육에 대한 이해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개점을 연기 또는 보류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37조, 제38조에 따라 불참 시 계약 갱신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비고
1	서울	월드타워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지하1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고
12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81,371	POS매출

- 끝 -

별지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지2.

(1) 집기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기타품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원/부재료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점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No.	상 호	대표자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별지4.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가맹금 예치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엠제이부티고 주식회사
	성명(대표자)	민준홍
	주소(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0, 6층 601호 (석촌동, 석촌호수타워)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확인서

확인서1: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체크□)

확인서2: 가맹계약서 수령 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가맹계약서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체크□)

확인서3: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 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창업 예정지 인근 10개 매장의 현황을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체크□)

확인서4: 비밀 유지 약속

본인은 귀사의 정보공개서 등을 수령하며,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본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귀사에게 수령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의 자료를 신속하게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제 공 일 자 :	
수 령 장 소 :	
수령자 주소 :	
전 화 번 호 :	010-
수 령 자 :	(서명 또는 인)
가 맹 본 부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 가맹본부란을 제외한 이외의 기재란은 반드시 가맹점주가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